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13
------------	-----

2018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8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안 제3조 관련 별표)

-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 및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5조)
- 조문 표현 정비(안 제6~7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본 조례의 시행규칙은 사문화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현행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7. 5. ~ 7. 25.) 결과: 별도 첨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10. 12. ~11. 1.) 결과: 의견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위원회 단독 심의를 규정하는 한편 별표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¹⁾은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2017년 8월 법이 일부 개정되었음

※ 참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17.8.9 / 시행 '18.2.10.)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1)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울러 2018년 2월 영 일부 개정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 참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18.2.9/시행'18.2.10)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법제심사 결과²⁾에 따라 제2조에 ‘사업자’와 ‘승인관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영 [별표 1]³⁾의 대상사업과 동일하게 동 조례 상 별표로 두어 그 범위를 직접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⁴⁾은 삭제하고, 제6조(이의 신청)·제7조(사후관리)·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은 조문 표현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이는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인 바,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2)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무담당관-12882(2018.9.6.)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4) 현행 동 조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8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

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제6조(이의신청)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구 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를 따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p>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p> <p>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p> <p>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p>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p> <p>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p>	
다. 에너지 개발	<p>「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p>	
라. 항만의 건설	<p>「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p>	
마. 도로의 건설	<p>「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p>	

	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 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km 이상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3)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 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17,000㎡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000㎡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투견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35,000㎡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000㎡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20) 장례식장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sum_{i=1}^n \frac{Pia}{Mia} \times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 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하지 않는다.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을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거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p><신 설></p>	<p>제2조(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p>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p> <p>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p>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현행	개정안
<p>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제한 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받는 시설물</p> <p>②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p> <p>제4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p>	<p>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p> <p>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출하여야 한다.</u></p> <p><u>② 승인관청</u>은 사업자가 제출한 <u>교통영향평가서의 시행과 연관이 있는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승인관청 내 교통, 도시계획, 도로,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p> <p><u>③ 승인관청</u>은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u>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영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u>④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행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u></p> <p><u>제5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30명 이상 40명</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이하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u></p> <p><u>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천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⑥ 소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위원 중에서 추천된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⑦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u></p>	

현행	개정안
<p><u>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안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u></p>	
<p><u>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심의를 거친다. 단,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중 영 제13조의2 제3항의 별표1의 대상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 주용도가 교통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u></p>	<p><u>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u></p> <p><u>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 <u>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 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u> <u>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u>

현행	개정안
<p>제7조(이의신청) 법 제17조의2의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1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사후관리) 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2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u></p> <p>4. 법 제2조제2호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p> <p>제6조(이의신청)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p> <p>제7조(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p>

현행	개정안
<p><u>제9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u></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 심의·의결-----</u> ----- ----- -----.</p> <p><u><삭 제></u></p>